

뱃살집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등록일 2025-05-29

[뱃살집]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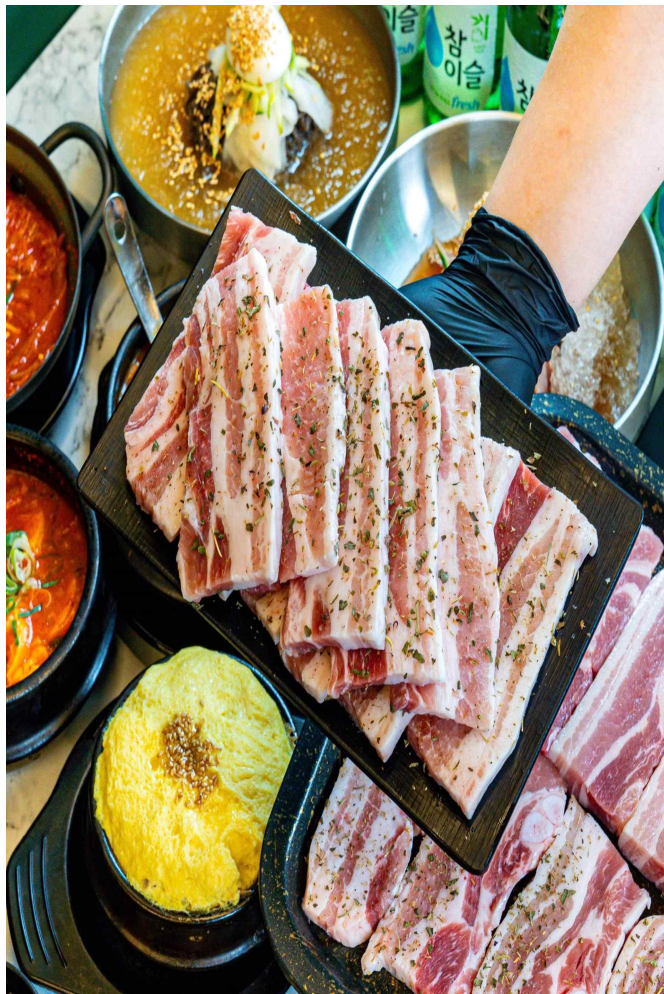
20 . . .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뱃살집

가맹본부 대표 번호 0507-1427-1997

가맹본부 주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125,1층1,2호(송의동)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 등록이 완료 될 경우 변경 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 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형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	2023년 02월 01일	사업자등록번호	893-67-00517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대표자	대표번호
가맹본부	뱃살집	김도현,이호영	0507-1427-1997
특수관계인 (임원)	해당없음	영업표지	주소
		뱃살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125,1층1,2호(송의동)

3. 내·외국 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바로 전 3개년 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뱃살집의 명칭 · 상호 · 서비스표 ·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관련 정보	BI
뱃살집	뱃살집 00점 (해당 지역명 표기)	출원번호 4020230227307 (2023.12.13)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 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VAT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	-	-	-	-	-
2023년	-	-	-	363,257	-	-
2024년	-	-	-	323,221	-	-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이를 대체합니다.

나. 당사는 2025년 가맹사업 예정으로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 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 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도현	공동 대표	2023년02월01일 ~ 현재	가맹사업 운영	공동 대표
	이호영	공동 대표	2023년02월01일 ~ 현재	가맹사업 운영	공동 대표

8. 바로 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0	0

9.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뱃살집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뱃살집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건본 이미지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 번호 및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상표 - 서비스표		출원일자 2023년12월13일	출원번호 4020230227307	김도현 이호영	출원 중
권리 범위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허용한 범위 내				

* 귀하가 허용 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이하 '키프리스'라고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뱃살집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25년 예정입니다.
당사의 뱃살집의 최초 직영점 오픈일은 2022년 03월 01일입니다.

2. 뱃살집의 연혁

뱃살집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사무소의 소재지
뱃살집	뱃살집	김도현, 이호영	2025년 예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25,1층1,2호(송의동)

3. 뱃살집의 업종

뱃살집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뱃살집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외식	돼지고기 구이 전문점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말 뱃살집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뱃살집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지역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0	1	2	0	2	2	0	2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1	0	1	2	0	2	2	0	2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뱃살집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뱃살집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기준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2024년	0	0	0	0	0	0

당사는 2025년 가맹사업예정으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가맹점 변동 현황이 없습니다.

6. 기타 가맹사업현황

뱃살집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뱃살집 가맹점사업자 한명이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VAT미포함)						산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매출액	면적3.3m ² 당	최고 매출액		최저 매출액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면적3.3m ² 당	

전체	0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당사의 뱃살집 브랜드는 2025년 가맹사업 시작 예정이므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사업자 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뱃살집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12월 31일	0	0

당사는 2025년 가맹사업예정으로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가맹점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 현황

당사는 뱃살집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바로 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뱃살집과 관련하여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 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뱃살집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 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상기 내용의 간략한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 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 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뱃살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천원 /VAT포함)	반환조건	반환 불가 사유
가맹비	가. 가입비 나. 최초 가맹점오픈을 위한 정보/ 자료 제공 등의 대가 다.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 지원의 대가	5,000	가맹점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 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으 로 오픈 이후 반환 불가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5,000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 과 상계 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으로 교육 이후 반환 불가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단위:천원/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 불가 사유
교육비	양수 개점 교육비	5,000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 계 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 멸성 비용으로 교육 이후 반환 불가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단위:천원/VAT포함)	반환조건	반환 불가 사유
계약 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 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2,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 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 증금을 초과하 는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내역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천원/VAT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12,000	7,000
가맹비	5,000	-
교육비	5,000	5,000
보증금	2,000	2,000

*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없습니다.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뱃살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VAT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인테리어 설비	일백	36,000	1,200	가맹 계약시 개별 계약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간판	(주)디자인레드몽키	5,000	166		
주방 설비	일백	13,000	433		
주방 집기	우진주방	3,000	-		
가구 및 비품	오복가구 신한로스타	4,000	-		
초도물품	가맹본부	3,000	-		
합계	-	64,000		-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 및 물품 구입시에는 검수비가 발생합니다.(3.3㎡ 당 330,000원(VAT포함))

ㄱ. 위 표의 면적 3.3㎡ 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당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적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증감하지 않습니다.

ㄴ.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99 ㎡, 30 평 기준)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ㄷ.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 시설공사, 화장실 공사, 외부 상하수도 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ㄹ. 자세한 비용은 계약 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 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 또는 총납입금액의 2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 또는 총납입금액의 50%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 또는 총납입금액의 70%

* 상기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 기준

벳살집 가맹점 입지 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 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A.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B. 가맹희망자의 입지 선정에 당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을 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사.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또는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 방법·공급 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 방법, 공급 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내역	공급 업체	공급 방법
별첨 2 참조			계약 체결 시 별도 공급

* 귀하는 지정된 주문 시스템 상의 전용상품(원·부재료)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지정된 주문 시스템 상의 원·부재료 품목의 스펙 및 조리 레시피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역은 계약 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금전지급 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금액(단위:천원/VAT포함)		지급 시기
예치가맹금(계약금)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인	계약 체결 시
	12,000	7,000(일시불)	
중도금	기타 대금의 70%	해당 없음	공사 시작 시
잔금	기타 대금의 30%	해당 없음	오픈 5일 전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 (단위:원/VAT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 표지 및 지식 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본부	카드 매출액의 2%	매월 05일	후불로 반환 불가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 교육		기본 교육은 무 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 별 청 구	실비로 반환 불 가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 라 가맹점사업자 와 협의하여 산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 으로 실시 될 경

			정		우 실비로 반환 불가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 는 교육으로 개 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가 협의 공동 판촉 시 기 획 비용은 당사 가 부담하며 판 촉물 제작 비용 은 가맹점사업자 가 부담함. 그 밖의 판촉 비용 의 부담은 협의 하여 결정함.		교육 실시 후 반 환 불가
판촉 분담비	판촉		당사의 경영 방 침에 따라 가맹 점사업자에게 일 부 부담 될 수 있음. (가맹본부 50% /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불가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 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브랜드/상품 광고)				광고 활동 실수 후 반환 불가
POS 사용료	POS 사용 대가	오케이정보통신	매월 30,000원	매월 5일	후불로 반환 불가
점 포 환 경 개 선 비 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 공사)	일백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20% / 가맹점 사업자 80% 부담)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는 경우 (가맹본부 40% / 가맹점사업자 60%)	개 별 청 구	별도 문서 참조
지연이자	금전지급의무의 지 급기한 경과시 지연	가맹본부	지급 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하		금전 지급 의무 또는 본 계약의

	이자		는 날까지 연 15%		위반으로 부담하 는 금전 지급 의 무의 지급 기간 을 경과 했을 시 부담
--	----	--	----------------	--	--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의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 관리 감독 내역

ㄱ.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 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 POS, ERP 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귀하의 점포의 전산 매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 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조치 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소유권(사용권)변경,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 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한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 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한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운영권을 양수하는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의 비용 부담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뱃살집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가) 당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뱃살집 가맹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해야합니다. 이때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당사에게 있지 않는 이상 귀하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원형 또는 변형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귀하는 당사와 협력업체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당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상호 협의 하에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가맹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바)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영업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 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뱃살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단위:원)		구분
		상한	하한	
-	-	-	-	-

당사는 2025년 가맹사업 예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에 공급한 품목이 없습니다.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뱃살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해서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직접 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뱃살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나. 당사가 뱃살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다. 다만, 경영 방침에 따라 당사가 뱃살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뱃살집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 및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역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 3 참조	별첨 3에 기재 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 할 수 없습니다.	1회 서면 시정 요구 후 7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1회 서면으로 7일 이내 시정 요구를 진행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해지 절차 준 용

* 귀하가 승인 되지 않은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 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 또는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또는 알선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 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고기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뱃살집]	해당 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가맹점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반경 2KM(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 지도에 영업지역 표시)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사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하는 경우
---------------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 ④ 위의 사유에 준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의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 (안)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변경 된 조건에 대한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당사의 영업표지 이미지 등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귀하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의 비중

(단위:%)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년	0	100	0	0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년	0	0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벳살집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갱신시에는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 ②, 아니오 → 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 ④, 아니오 →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의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D-180 ~ D-90

⑤, 아니오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 ㉡, 아니오 → ㉠)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 아니오 → ㉠)	
⑥ 변경 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 → ㉡, 아니오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 아니오 → ㉢)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 ㉢, 아니오 → ㉠)	D-60일 이전
㉠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 간 가맹계약 체결	D-DAY
㉡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의 변경	
㉤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의 만료 또는 변경 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 계약 체결	

다.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7조 제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 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계약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 제3항	제25조 각호 및 제31조 제1항 제1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 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4조 제4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제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제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7조 제1항 ~ 제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명의로 경업 또는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0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 용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품질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래처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21조 제1항 ~ 제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1조 제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등을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제22조 제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6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	제27조 제2항	

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 또는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7조 제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제30조 제2항 ~ 제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30조 제8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25조 제21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31조 제1항 제2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계약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 정지 명령	제31조 제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법령에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계약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1조 제3항 각 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계약서)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제31조 제2항 각 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5)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② 정보공개서 제공 ③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약 15일 가량 소요) ④ 승인 여부 통지 ⑤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약 5일 소요) ⑥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1)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 비용(양수가맹비 · 교육비 · 계약 이행 보증금 등)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 및 겸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 및 겸업금지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뱃살집과 동종업종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뱃살집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뱃살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돼지고기 구이 요리를 전문으로 식사류와 함께 판매하는 외식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뱃살집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1:00 ~ 23:00	연중 무휴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30평 기준 상주인원을 3인 이상씩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비고
매장 청결	① 담당자 매장 방문 ② 청결도 확인 ③ 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 ④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⑤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① 담당자 매장 방문 ②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③ 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 ④ 완료	수시	
POS 사용	① 담당자 매장 방문 ② POS 사용 상태 점검 ③ 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 ④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⑤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	가맹점	
공동광고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①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 ②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③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가맹점 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 부담	제작비용부담	① 행사 계획 공고 ② 가맹점 부담액 제시 ③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 활동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 한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지속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및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계약서)
① 귀하는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할 경우 또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 삼 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제1항
② 귀하가 필수 구입 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필수 구입 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백만원 (₩1,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 일십만원(₩100,000)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제2항
③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 의 품질요구	제33조 제3항

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상품·용역 이외의 상품·용역을 판매할 경우(냉장고 보관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적발 즉시 위약별로 금 이백만원(₩2,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 이십만원(₩2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④ 귀하가 제3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은 잔여 계약기간일 X 중단·폐업일로부터 12개월간 일 평균 매출액*의 15%] ※ *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영업기간동안의 일 평균 매출액의 15%로 적용	제33조 제4항
⑤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 금 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제5항
⑥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제33조 제6항
⑦ 귀하의 위법 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제7항
⑧ 본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위약별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8항
⑨ 본 계약에 규정 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7조 제1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507-1427-1997)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 전부담 금전지급 방 법 참조
② 1차 상담	- 전화상담 또는 본사 방문상담	-	
③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 점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검토 - 인근 가맹점 확인	14일 이상	
④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계약서 검토	14일 이상	
⑤ 가맹계약 및 계약금 지급 (예치 포함)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D-21	
⑥ 점포 계약	- 점포 입지 선정 - 점포 개발 착수 - 상권 분석	필요 시 실시	
⑦ 점포 실측 및 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까지)	D-19	
⑧ 도면 작성	- 인테리어 및 별도 추가공사 도면 협의	D-17	
⑨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D-14	
⑩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D-2	
⑪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생 및 점주 교육	14일	
⑫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 결정) - 오픈행 행사(담당자 판단)	D-DAY	

* 상기 일정은 개별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k.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상호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 환경 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① 간판 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③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② 4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지급 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 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④ 분할지급 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①과 같이 증빙서류 첨부) 나.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 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 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본부	① 계약이행 ② 표준화 ③가맹점 별 시장 조사 · 판촉 행위 ④ 가맹점의 경영 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①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 방문 ② 가맹점 현황 분석 ③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 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	① 계약이행 ② 표준화 ③가맹점 별 시장 조사 · 판촉 행위 ④ 가맹점의 경영 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①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②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③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 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 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 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Ⅶ.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 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뱃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 ·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신규 교육	운영, 상품 교육	개별 또는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 교육		

* 상기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개점 전 교육 · 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뱃살집 가맹점 운영 관리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 ·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 수렴	개별 또는 집단 강의	개별 협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

교육 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 · 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 시간	비용(단위:천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본점에서 14일 교육 과정 진행	5,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 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 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가 협의	
-----	--	---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필수) 및 기타인원(협의)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 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 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대표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대표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s://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